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 1 민 사 부

결 정

사 건 2016카합10031 전직 금지 및 강의서비스 제공금지 가처분
채 권 자 주식회사 파고다아카데미
채 무 자 A

주 문

1. 채무자는 2016. 6. 30.까지 주식회사 에스티유니타스 부산학원에서 근무하거나 강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채무자는 2016. 6. 30.까지 주식회사 에스티유니타스 부산학원에서 강의를 촬영하거나 촬영한 강의 동영상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무자는 2016. 6. 30.까지 주식회사 에스티유니타스 부산학원의 웹페이지에서 채무자가 위 주식회사 에스티유니타스 부산학원에서 2016년 5월부터 강의할 것이라는 내용을 홍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채무자는 2016. 6. 30.까지 주식회사 에스티유니타스 부산학원과 그 부근 100m 이내에서 채무자가 위 학원에서 2016년 5월부터 강의할 것이라는 내용을 홍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집행관은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6. 채무자가 제1, 2항 기재 각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위반행위 1회당 1,000,000원씩을, 제3, 4항 기재 각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위반행위 1일당 1,000,000원씩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라.
7. 채권자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8.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신 청 취 지

위반행위 1회당 10,000,000원씩의 간접강제를 구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소명된다.

가. 채무자는 2009. 7.경부터 채권자가 운영하는 '과고다어학원'(이하 '채권자 어학원'이라 한다)에서 토익 강의를 하였는데, 채권자와 채무자는 2015. 2. 17. 계약기간과 보수 등을 다시 정하여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새로 체결하였다. 계약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2조 : 계약기간을 다음과 같이 한다.

2015. 3. 1.부터 2020. 4. 30. (62개월)

제10조 : 사전 동의 및 영업비밀 보호

가. (갑)의 종합학습계획에 따른 효율적인 과정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 (을)은 온·오프라인 강의, 교육컨텐츠 제공·제작·개발 기타 이와 유사한 업무수행계약을 동종·유사업종



업체와 체결 또는 사업을 할 경우 (갑)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한다.

나. (을)은 (갑)과 용역계약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갑)의 사전 동의 없이 동종·유사업종에 취업이나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등 (갑)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도록 한다.

다. (갑)의 사전 동의 없이 가항의 계약을 동종·유사업종 업체와 체결 또는 사업을 할 경우와 용역계약 종료 후 3개월 내에 사전 동의 없이 동종·유사업종에 취업이나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을)은 (갑)에게 계약 체결일("나"항의 경우 용역계약 종료일)을 기준으로 6개월간 총 매출액(본 용역업무로 발생한 회사 매출 기준)에 준하는 금액을 (갑)에게 지급함으로써 (갑)의 사전 동의에 갈음키로 한다.

나. 채무자는 2016. 2. 29. 사직서를 제출하며 2016. 3. 31.까지만 채권자 어학원에서 강의를 제공할 계획임을 알렸고, 2016. 3. 14. 내용증명으로 다시 한 번 이 사건 용역계약이 2016. 3. 31. 종료될 예정임을 알렸다.

다. 채무자는 2016. 4.부터 채권자 어학원에서 193m 떨어진 B 부산학원(이하 'B 학원'이라 한다)에서 토익 무료 특강을 시작하였고, 2016. 5.부터는 토익 정규 강의를 하기로 하여 자신의 네이버 카페 및 B 홈페이지, B 학원 건물 현수막, 유인물 등을 이용하여 강의를 홍보하고 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채권자

채권자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채무자에게 약정된 계약기간 내에 성실한 강의 제공을 청구할 권리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직금지청구권, 영업비밀 침해 금지청구권이 있다. 만일 이 사건 용역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3개월 이내에는 다른 어학원과 계약 체결을 하지 않을 의무가 있으므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B 학원에서의 강



의 제공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채무자의 강의 중단으로 수강생들의 환불 요청이 계속될 것이 예상되고, 채무자의 이직으로 채권자의 영업비밀이 침해되므로 가처분으로 채무자의 강의 제공 금지를 구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

나. 채무자

1) 이 사건 용역계약에 의하더라도 채무자가 계약 종료 후 3개월 동안 자신의 강의를 홍보하지 않아야 할 의무는 없다.

2) 채무자는 채권자 어학원의 근로자에 해당하는데,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용역계약은 종료되었다. 채무자가 근로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 사건 용역계약은 채권자의 계약 위반과 신뢰 파괴 행위로 종료되었다. 따라서 계약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경쟁업체 취업금지청구권, 영업비밀 침해 금지청구권은 인정될 수 없다.

3) 채무자의 전직으로 채권자의 영업비밀을 침해할 가능성은 없으므로 이 사건 용역계약 제10조 나항은 적용될 수 없고, 위 조항이 영업비밀 침해가 없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해석한다면 채무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자유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게 되어 사회질서에 반하는 무효의 규정에 해당한다.

또한 채무자는 이 사건 용역계약 제10조 다항에 따라 채권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채권자의 사전 동의에 갈음하고 동종·유사업체에 취업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용역계약 제10조 나항에 의하여 곧바로 전직금지를 구할 수는 없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채권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까지 이 사건 용역계약 제10조 나항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4) 채무자는 앞으로 채권자 어학원에서 강의를 제공할 계획이 없으므로 채무자가



다른 학원에서 강의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채권자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불분명한 반면 채무자의 손해는 막대한 점을 고려하면 보전의 필요성도 없다.

3. 판단

가. 피보전권리에 관한 판단

1) 전직금지의무의 발생

이 사건 용역계약 제10조 나항 및 다항에 의하면, 채무자는 계약 기간 중에는 물론이고 계약 종료 후에도 3개월 동안은 채권자 어학원의 동종·유사업종에 취업하거나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의무(이하 '전직금지의무'라 한다)가 있다. 채무자가 2016. 2. 29. 채권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2016. 3. 31.자로 이 사건 용역계약을 종료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채무자가 적어도 2016. 4. 1.부터 3개월이 되는 2016. 6. 30.까지는 전직금지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에 의문이 없다.

2) 이 사건 용역계약 제10조 다항에 관한 채무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① 채무자는 이 사건 용역계약 제10조 나항에서 정한 전직금지의무는 영업비밀 침해가 있는 경우에만 발생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조항은 일반적으로 강사가 용역계약 종료 후 단기간 내에 이직할 경우 기존에 사용하던 강의 방법, 노하우, 전략, 수강생 정보 등을 그대로 가져가 활용함으로써 채권자의 영업비밀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계약 종료 후 3개월 내 전직'을 금지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 조항은 '계약 종료 후 3개월 내 전직하는 행위'와 '그 밖에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② 또한 이 사건 용역계약 제10조 나항은 채권자의 영업이익을 독점하기 위한



규정이라기보다 채권자에게 영업비밀 유출 등 강사의 이직으로 인한 손실에 대비하기 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는 취지의 규정으로 보이는 점, 전직이 금지되는 기간인 3개월은 채권자의 이익과 강사의 직업의 자유와의 형량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처럼 합리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로 전직금지약정을 제한하는 이상 반드시 대가 지급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조항이 실질적인 영업비밀 침해 여부를 묻지 않고 전직금지의무를 인정한다고 하여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③ 채무자는 이 사건 용역계약 제10조 다항을 들어 나항에 기한 전직금지청구를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채무자가 이 사건 용역계약 제10조 다항에서 정한 채권자의 사전 동의에 갈음하는 금액(용역계약 종료일 기준 6개월간 매출액)을 지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금전 지급을 사전 동의에 갈음하는 조항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전직금지의무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한편, 이 사건 용역계약이 채권자의 귀책사유로 종료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소명이 부족하다.

3) 강의 홍보 금지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채무자가 이 사건 용역계약 제10조 나항 또는 다항에 의하여 계약기간 중 또는 계약 종료 후 3개월 동안 B 학원에서 강의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한다면, 그 강의를 위한 준비행위 또한 금지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특히 강의를 홍보하는 것은 강의의 실현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어서 강의 홍보 금지는 강의 금지와 불가분의 의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용역계약에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강의 홍보 금지를 구할 근거가 없다는 채무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보전의 필요성

앞서 본 기초사실에다가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전직금지를 구할 수 있는 기간은 3개월에 불과하므로 본안소송을 기다려서는 권리 구제의 실효성이 없게 되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채무자는 이미 5월부터 B 학원에서의 정규 강의를 계획하고 대대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고 이에 따라 일부 수강생들은 이탈 조짐을 보이고 있는 점, 전직이 금지되는 3개월 동안 채무자가 채권자 어학원에서 강의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채권자로서는 강사 보완, 새로운 강의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등으로 수강생들의 이탈에 대비하고 채무자의 이직으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 이 사건 가처분으로 인한 이익이 없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채무자는 계약 종료일을 2016. 3. 31.로 통지한 후 채권자로부터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전직금지의무에 대하여 고지를 받았음에도 3개월 내에 B 학원에서 강의를 감행하였는바, 이와 같이 스스로 적극적으로 의무 위반 상태로 나아갔다가 이를 시정함으로써 발생하는 채무자의 손해를 채권자의 손해보다 더 중요한 고려 요소로 삼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

다. 간접강제, 집행관 공시

채무자가 이미 B 학원에서의 강의를 대대적으로 홍보한 점, 채무자가 예정대로 B 학원에서 강의를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 이 사건 가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주문에서 금지한 강의 제공 등을 계속할 개연성에 대한 소명이 있고 그 위법상태를 신속하게 제거할 필요성 또한 인정되므로 채무자에게 간접강제를 명하되, 그 금액은 이 사건 가처분 위반으로 인한 채권자의 손



해를 고려하여 강의 제공 금지의 경우 위반행위 1회당 100만 원, 강의 홍보 금지의 경우 위반행위 1일당 100만 원으로 정한다. 또한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집행관 공시를 함께 명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4. 29.

재판장 판 사 정 원

 판 사 안 지 열

 판 사 이 영 립